

의안번호	2213630
의 퇴 인	이인선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0.
추계번호	25F563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21조의26제5항 신설 (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)	○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－ 감면내용: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2027.12.31.일 이전에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1조의26 제5항 신설 (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현행 내국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 이연
 - 내국법인이 자산 양도 시 채무상환 또는 자산투자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3년 이연 후 3년간 분할납부
- 개정안에 따라 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신설함에 따라 지방세 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21조의26 제5항 신설)

-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
- 그러나 자료의 부재로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이 될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,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- 또한, 본 개정안은 구체적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및 감면내용이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가 어려움

Ⅲ. 부대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통해 개정되어야 함
- 또한, 본 개정안은 구체적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내용이 부재하므로 감면을 및 적용기한 등 내용 추가 필요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